한국유산균·프로바이오틱스학회 회칙	
<u></u> 현	개정(안)
2004 년 5 월 15 일 제정	2004 년 5월 15일 제정
제 1장 총 칙	제 1장 총 칙
제 1 조(명칭) 본회는 한국유산균·프로바이오틱스학회라고 칭한다.영문명칭은 Korean Society for Lactic Acid Bacteria and Probiotics, 약칭은 KSLABP로 한다.	제 1 조(명칭) 본회는 한국유산균·프로바이오틱스학회라고 칭한다. 영문명칭은 Korean Society for Lactic Acid Bacteria and Probiotics, 약칭은 KSLABP로 한다.
제 2 장 목적 및 사업	제 2 장 목적 및 사업
제 2 조(목적) 본회는 유산균관련 연구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고,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촉진한다.	제 2 조(목적) 본회는 유산균관련 연구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고,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촉진한다.
제 3 조(사업)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. (1) 연구회 및 총회의 개최 (2) 해외관련연구자와의 정보교환 및 교류 (3)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	제 3 조(사업)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. (1) 연구회 및 총회의 개최 (2) 유산균, 프로바이오틱스 및 응용연구분야와 관련된 기사 총설, 연구논문 등을 수록한 학술지의 발행 (3) 해외관련연구자와의 정보교환 및 교류 (4)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
제 3 장 회 원	제 3 장 회 원
제 4 조(회원)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. (1) 정회원 : 유산균에 관심을 갖는 자로서,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입회한 개인	제 4 조(회원)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. (1) 정회원 : 학회 사업 목적에 관심을 갖는 자로서,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입회한 개인으로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
-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입회한 개인
- (3) 단체회원 : 본 회의 사업을 협조하기 위하여 입회한 법인 또는 단체

제 5 조 회원은 본 회가 실시하는 각 사업의 참가 및 본회의 총회에 참가하여 의결을 행사할 수 있다.

제 6 조(입회) 본회에 정회원, 학생회원 또는 단체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입회 신청서를 학회에 제출하고 입회년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- (2) 학생회원 : 전문대, 대학, 또는 연구소에 소속하는 학생으로 │(2) 학생회원 : 전문대, 대학, 또는 연구소에 소속하는 학생으로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입회한 개인으로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 - (3) 단체회원 : 본회의 사업을 협조하기 위하여 입회한 법인 또는 단체로, 단체회비를 납부한 단체로 한다.
 - (4) 종신회원 :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.

제 5 조 회원은 본회가 실시하는 각 사업의 참가 및 본회의 총회에 참가하여 의결을 행사할 수 있다.

제 6 조(입회) 본회에 정회원, 학생회원, 단체회원, <mark>종신회원</mark>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입회 신청서를 학회에 제출하고 입회년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 8 조 회원은 회원의 주소, 성명, 소속등에 변경이 발생할 지 8 조 회원은 회원의 주소, 성명, 소속 등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, 즉시 본회에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9 조(탈퇴) 회원은 이하의 이유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| 제 9 조(탈퇴) 회원은 이하의 이유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를 탈퇴한다.

- (1) 소정의 탈퇴원을 학회에 제출 한 경우
-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즉시 자격 변경원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(3) 본회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, 명예를 해손 한 행위가 명백하여 총회에 의하여 제명이 결정된 경우

제 4장 총 회

제 10 조(총회)

- 1.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.
-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한다.
- 3 총회의 의장은 당해년도 회장으로 한다.
- 4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의 당해년도 대회 개최시에 실시한다.
- 5 임시총회는 임원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제 11 조(총회의 소집)

- 1.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
- 2. 총회의 소집을 위하여 개최전에, 회의의 목적,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12 조(회의의 의결방법)

- 1. 회의는 총회원수의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. 단,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으로 간주한다.
- 2.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,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🕇 총회원수의 출석 정족수는 유보한다.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3.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수의 과반수 이상의 표결로 결정한다. 단, 가부가 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.

제 13 조(총회의 의결사항) 본 회칙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,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통과하여야 한다.

제 7 조 정회원, 종신회원, 학생회원, 단체회원의 연회비는 기제 7 조 정회원, 종신회원, 학생회원, 단체회원의 연회비는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경우, 즉시 본회에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
본회를 탈퇴한다.

- (1) 소정의 탈퇴원을 학회에 제출 한 경우
- (2) 학생회원의 경우,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. 단 정회원으로 (2) 학생회원의 경우,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. 단 정회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즉시 자격 변경원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(3) 본회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, 명예를 훼손 한 행위가 명백하여 총회에 의하여 제명이 결정된 경우

제 4장 총 회

제 10 조(총회)

- (1)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.
- (2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한다.
- (3) 총회의 의장은 당해년도 회장으로 한다.
- (4)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의 당해년도 대회 개최시에 실시한다.
- (5) 임시총회는 임원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제 11 조(총회의 소집)

- (1)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
- (2) 총회의 소집을 위하여 개최전에, 회의의 목적,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12 조(회의의 의결방법)

- (1) 회의는 총회원수의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. 단,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으로 간주하며, 법인화 전까지는
- (2)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,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서면을 통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(3)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수의 과반수이상의 표결로 결정한다. 단, 가부가 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.

제 13 조(총회의 의결사항) 본 회칙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,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통과하여야 한다.

- (1) 회칙의 변경
- (2)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
- (3)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결정 또는 변경
- (4) 사업보고, 수지결산,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승인
- (5)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14 조(의사록 작성)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(議事)에 대하여 │ 제 14 조(의사록 작성)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(議事)에 대하여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한다.

제 5장 임 원

제 15 조(임원의 구분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.

- (1) 회 장 (1 인)
- (2) 부회장 (약간명)
- (2) 이 사 (약간명)
- (3) 감사 (2명)

제 16 조(임원의 역할)

- 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, 그 사업을 총괄한다.
-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업무를 관장하고, 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,
-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3. 이사는 본회의 회무(會務)를 집행한다.
- 감사(監査) 한다.

임원의 임기:::

제 17 조(임원의 임기)

- 1. 임원의 임기는 창립 후 임원진의 회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고 즉시 본 회칙의 17조 1항에 임기를 명시하며,
- 그 효력은 명기 후에 즉시 발효 된다. 임기의 명기에 앞서 현재의 17조 1 항은 삭제한다.
- 2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후 학회가 정상화되면 1 년으로 수정한다.
- 3. 보결 또는 증원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,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 잔여 임기간으로 한다.

- (1) 회칙의 변경
- (2)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
- (3)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결정 또는 변경
- (4) 사업보고, 수지결산,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승인
- (5)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한다.

제 5장 임 원

제 15 조(임원의 구분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.

- (1) 회장 (1 인)
- (2) 부회장 (약간명)
- (3) 이사 (약간명)
- (4) 감사 (2 명)
- (5) 명예이사 (약간명)

제 16 조(임원의 역할)

- (1)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, 그 사업을 총괄한다.
- (2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업무를 관장하고, 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,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(3) 이사는 본회의 회무(會務)를 집행한다.
- 4. 감사(監事)는 이사회의 회무 집행, 재산 및 회계 내용을 │(4) 감사(監事)는 이사회의 회무 집행, 재산 및 회계 내용을 감사(監査) 한다.

제 17조(임원의 선출 및 임기)

- |(1)회장 및 부회장: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, 회장임기는 1년으로 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.
- (2) 총무이사: 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(3)학술위원장, 편집위원장: 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(4)이사: 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(5) 감사: 이사회에서 선출하며, 총회의 인준을 받고,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(6) 명예이사: 본회는 고문과 이사 중에서 현직에서 은퇴한 경우 명예이사로 추대 한다.
- (7)보결 또는 증원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,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 잔여 임기간으로 한다.

고문의 위촉:::

제 18 조(고문의 위촉)

- 1. 본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.
- 2. 고문은 본회 운영상의 각 문제에 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.

제 19 조(간사)

- 1. 본회의 원활한 실무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- 2. 목적에 따라, 간사장, 총무간사, 학술간사, 국제협력간사, 기획간사등을 구분하여 임명 할 수 있다.

제 6장 이 사회

제 20 조

- 1. 이사회는 이사들로 구성한다.
- 2.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- 3.이사회의 의장직은 회장이 수행 한다.
- 4. 이사회는 이사총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.
- 5. 이사회는 서무, 회계, 편집 등 본회 통상의 회무(會務)를 집행한다.
- 6. 감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제 7장 평 의 원

제 21 조 본회의 규모가 적정수준에 도달하였을때 평의원을 │ 제 21 조 본회의 규모가 적정수준에 도달하였을 때 평의원을 둔다. 이에 관한 규정은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.

제 8 장 회 계

제 22 조(사업년도) 본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

제 23 조(사업계획 및 수지예산)

- 1. 회장은 매 사업년도 개시 이전에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의 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2. 감사는 전항의 서류를 수리 할 때 각 서류를 검사한다.

제 18 조 (자문 또는 고문의 위촉)

- (1) 본회에 자문 또는 고문을 둘 수 있다.
- (2) 자문 또는 고문은 본회 운영상의 각 문제에 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.

제 19 조 (간사)

- (1) 본회의 원활한 실무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- (2) 목적에 따라, 간사장, 총무간사, 학술간사, 국제협력간사, 기획간사등을 구분하여 임명 할 수 있다.

제 6장 이 사회

제 20 조

- (1) 이사회는 이사들로 구성한다.
- (2)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- (3) 이사회의 의장직은 회장이 수행 한다.
- (4) 이사회는 이사총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.
- (5) 이사회는 서무, 회계, 편집 등 본회 통상의 회무(會務)를 집행한다
- (6) 감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제 7장 평 의 원

둔다. 이에 관한 규정은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.

제 8 장 운 영

│ 제 22 조(사업년도) 본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일 까지로 한다.

제 23 조 (사업계획 및 수지예산)

- (1) 회장은 매 사업년도 개시 이전에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의 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(2) 감사는 전항의 서류를 수리 할 때 각 서류를 검사한다.

제 24조(재정) 본회의 재정은 회비, 찬조비, 광고비 및 기타수익 으로 충당한다.

- (1) 회비, 종신회비, 학생회비, 단체회비, 이사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, 명예이사는 회비 면제 한다.
- (2)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기금을 둘 수 있다.

(3)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31일로 하며,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매년 보고한다.

제 25 조(사무) 본회의 전체 사무운영은 총무간사가 회장단과 협의하여 집행하며, 모든 회무사항은 회지에서 발표한다.

제 26 조(회의) 회의는 총회, 이사회, 회장단 회의, 학술위원회 회의 및 포상위원회의가 있으며, 중요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 또는 회지에 발표한다.

제 27 조(포상) 포상은 필요에 따라(포상규정에 의거 심의한 학술상, 기술상 및 공로상 등)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.

부 칙

- 1. 본 회칙은 2004 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- 2. 본회의 회비는 정회원 20,000원, 학생회원 10,000원, │ 2. 본회의 년회비는 정회원 50,000원, 학생회원 20,000원, 단체 단체회원 1구 500,000 원 (1구 이상) 으로 한다.
- 3. 본회의 규모가 적정수준에 도달할 시점까지 종신회원을 둔다.
- 4. 입회수속은 회장 앞으로 입회신청서를 작성하고 회비를 3. 입회수속은 입회신청서를 작성하고 회비를 첨부하여 학회사 첨부하여 학회사무국으로 제출한다.
- 5. 본회의 사무국은 회장 또는 임원의 소속기관에 둔다.

부 칙

- 1. 본 회칙은 2004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- 회원 1구 500,000원 (1구 이상)으로 하며, 종신회원의 경우 종신 회비는 300,000원으로 한다.
- 무국으로 제출한다.
- 4. 이사구성 및 이사회의 업무는 법인화 전까지 유보하며 필요 한 사항은 간사회의에서 수행한다.
- 5. 포상위원회 구성 및 업무는 법인화 이전까지는 간사회의에서 수행한다.